

부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6년 6월 8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6년 6월 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12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06년 6월 14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 제안이유

-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동사무소 및 관내 유희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선거제도 개편에 따라 당연직 고문을 없애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동 관내의 유희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조 내지 제7조)
- 주민자치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하여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하도록 함.(안 제7조 및 제11조)

- 지방선거제도 개편(중선거구제)에 따라 시의원의 당연직 고문 제도를 폐지하고, 동장이 위촉하도록 개선함.(안 제17조)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 노력 및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도록 함.(안 제18조)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조례안을 보면 고문이 3명인데 당해 지역구에 시의원이 3명인 경우 시의원이 고문으로 들어가면 일반주민은 고문으로 들어갈 기회가 없으므로 4명으로 늘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 고문을 당해 동 관할구역 내 거주자로 규정하게 되면 시의원이 없는 동은 시의원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없으므로 이 조항을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자치부 준칙안에 의거 고문을 3명으로 하고 있으나 고문 인원수를 늘리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봄. ○ 관할구역 내 거주자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토론요지

- 가. 찬성토론
 - 없음
- 나. 반대토론
 - 없음

5. 심사결과

- 수정의결

6. 소수의견 요지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부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521호
의결 년월일	2006. 6. 16 (제127회)

제출년월일 : 2006. 6. 8

제 출 자 : 부천시장

1. 수정이유

-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에 대한 인원이 3인으로 당해 지역구에 시의원이 3인인 경우 시의원이 고문으로 들어가면 일반주민은 고문으로 들어갈 기회가 없으므로 4인으로 늘리고, 고문을 당해 동 관할구역 내 거주자나 사업장 종사자로 규정하면 시의원이 없는 동은 시의원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없으므로 이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2. 주요골자

- “3인 이내의 고문”을 “4인 이내의 고문”으로 수정.(안 제17조 1항)
- “고문은 동장이 위촉하되, 당해 동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한다”를 “고문은 동장이 위촉하되,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한다”로 수정.(안 제17조 5항)

부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7조 1항중 “3인 이내의 고문”을 “4인 이내의 고문”으로 한다.

안 제17조 5항 “고문은 동장이 위촉하되, 당해 동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한다”를 “고문은 동장이 위촉하되,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한다”로 한다.

위의 수정부분 이외의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동일함.』

[수정안 포함]

부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 “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동사무소”를 “동”으로 한다.

제2조제1호·제3조제3호·제4조제1항·제5조제2항 및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중 “동사무소”를 각각 “동”으로 한다.

제7조제1항중 “동장이 한다”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한다”로 하고, 동조 제4항중 “동사무소의 동장”을 “동장”으로 하며, 동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시장과 동장은 관할구역 내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제4항중 “그 회복을 위해 변상”을 “그 회복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으로 한다.

제15조중 “동사무소”를 각각 “동”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중 “3인”을 “4인”으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동에서 선출된 시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를 “둘 수 있다”로 하고, 동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동사무소”를

“동”으로, “선출된 후보자”를 “선정된 자”로 하며, 동항 제1호중 “추천하는 후보자”를 “추천하는 자”로 하고, 동항 제2호중 “선출된 후보자”를 “선정된 자”로 하며, 동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7항 본문중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고문”으로 한다.

⑤고문은 동장이 위촉하되,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한다.

제1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위원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자치센터 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당연직이 아닌 고문이 다음 각 호의 1”을 “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단서를 삭제하며, 동항 제1호중 “동사무소”를 “동”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고문”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및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보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위원회의 위원 등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 임기 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p>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p>	<p>----- -----</p>
<p>1. 2. (생략) 3. <u>동사무소별</u> 자율적 운영 유도 4. 5. (생략)</p>	<p>1. 2. (현행과 같음) 3. <u>동</u>----- 4. 5. (현행과 같음)</p>
<p>제4조(설치 등) ① <u>자치센터</u>는 <u>동사무소</u>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u>동사무소</u>의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p>	<p>제4조(설치 등) ①-----<u>동</u> ----- ----- -----<u>동</u>----- ----- -----</p>
<p>②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p>제5조(기능) ① (생략)</p>	<p>제5조(기능) 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의 기능중 당해 <u>동사무소</u>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p>	<p>②-----<u>동</u>----- ----- ----- -----</p>
<p>③ (생략)</p>	<p>③ (현행과 같음)</p>
<p>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u>시장</u>은 자치센터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u>동사무소</u>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p>	<p>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 ----- -----<u>동</u>----- ----- -----</p>

현 행	개 정 안
<p>②시설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하되, <u>동사무소별</u>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p>	<p>②----- ----- -----<u>동</u>----- -----</p>
<p>③자치센터의 시설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당해 <u>동사무소</u>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 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③----- -----<u>동</u>----- ----- -----</p>
<p>④ (생략)</p>	<p>④ (현행과 같음)</p>
<p>제7조(운영) ①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 이라 한다)은 <u>동장이</u> 한다.</p>	<p>제7조(운영) ①----- ----- -----<u>위원회의</u> <u>심의를 거쳐 동장이</u> 한다.</p>
<p>②·③ (생략)</p>	<p>②·③ (현행과 같음)</p>
<p>④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u>동사무소</u>의 <u>동장과</u>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자치센터 운영을 수탁한 자나 단체에게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p>	<p>④----- -----<u>동장</u>----- ----- -----</p>

현 행	개 정 안
<p>⑤·⑥ (생략) <u><신설></u></p>	<p>⑤·⑥ (현행과 같음) <u>⑦시장과 동장은 관할구역 내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들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u></p>
<p>제11조(이용 등) ①~③ (생략)</p> <p>④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u>그 회복을 위해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u></p>	<p>제11조(이용 등) ①~③ (현행과 같음)</p> <p>④ ----- -----<u>그 회복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u>-----</p>
<p>⑤ (생략)</p> <p>제15조(설치) <u>동사무소의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둔다.</u></p>	<p>⑤ (현행과 같음)</p> <p>제15조(설치) 동----- ----- -----<u>동</u>----- -----</p>
<p>제17조(구성 등) ①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u>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동에서 선출된 시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u></p>	<p>제17조(구성 등) ①----- ----- -----<u>4인</u>----- -----<u>둘 수 있다.</u>-----</p>
<p>②동장은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 구역 안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p>	<p>②-----<u>동</u>----- -----</p>

현 행	개 정 안
<p>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 하여 추천 또는 <u>선출된 후보자</u>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 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 여야 한다.</p> <p>1. 당해 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 교, 통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언론·문화·예술 기타 시민·사회단체에서 <u>추 천하는 후보자</u></p> <p>2.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u>선 출된 후보자</u></p> <p>③·④ (생 략)</p> <p>⑤ <u>고문은 동장이 위촉하되, 당연 직이 아닌 고문을 위촉하는 경 우에는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구 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한다.</u></p> <p>⑥ (생 략)</p> <p>⑦ <u>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u></p>	<p>----- ----- -----<u>선정된 자</u>----- ----- ----- -----</p> <p>1. ----- ----- ----- -----<u>추 천하는 자</u></p> <p>2. -----<u>선 정된 자</u></p> <p>③·④ (현행과 같음)</p> <p>⑤ <u>고문은 동장이 위촉하되, 전문 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한다.</u></p> <p>⑥ (현행과 같음)</p> <p>⑦ ----- -----<u>고문</u>----- -----</p>

현행	개정안
<p><u>이 아닌 고문의</u>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p>	<p>----- -----.</p>